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동남보건대학교
DONGNAM HEALTH UNIVERSITY

Contents

일학습병행 개요 및 전문대 재학생단계 사업 소개 3

기업의 참여 혜택과 장점, 국고 지원 내역 요약 4

기업의 기본 참여조건, 기업지정 평가지표 요약 5

기업지정 절차, 기업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 6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FAQ 7



일학습병행 개요 및 전문대 재학생단계 사업 소개

일학습병행이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OJT)을 제공하고, 공동훈련센터(대학)에서는 이론 등 현장외훈련(OFF-JT)을 시행하여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훈련 제공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자격으로 인정하여 노동시장 통용성의 확보를 도모합니다.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이란?

동남보건대 최종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화학 관련 분야(제약, 화장품, 환경 등) 기업과 대학(학과)에서 1년간 직무에 필요한 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 사업 유형 중 하나



동남보건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 운영학과 | **식품제약과, 바이오환경보건과, 임상병리학과**

| 훈련종목 | 바이오의약품제조_L3, 화학물질분석_L3







기업의 참여 혜택과 장점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중심의 인재 육성과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절감"

1	각 기업에 특화된 교육	- 기업현장교사가 학습근로자를 직접 가르쳐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2	탄탄한 이론 교육 제공	- 기업 현장 교육에서 부족한 이론적 기반을 대학교수진을 통해 보완 교육
3	훈련비용 지원	- 훈련 제공에 대하여 훈련비, 담당자 수당, 훈련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 지급
4	적정 훈련기간(1년)과 우수 학습근로자 채용	- 타 일학습병행 사업 기간(6개월 또는 2년) 대비 적정 기간 운영으로 기업과 학습근로자의 높은 만족도 - 졸업학년(3학년) 재학생을 채용하므로 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비 높은 전공 소양 보유
5	장기근속 유도	- 국고 지원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신입사원 재교육비 절감과 미스매치 해소 → 핵심인재 양성 및 장기근속 유도 가능
6	기타 정책적 혜택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 가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고용노동부·교육부)**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국고 지원 내역 요약

※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는 지정을 위해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항목	금액	수혜대상	비고
훈련비	[학습근로자 1인당] **연간 약 385만원**	기업	년 572시간 훈련 기준
훈련장려금	[학습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	기업	
기업현장교사 수당	[훈련실시 월 지급] **월 33만원**부터 차등지급	현장교사 (교육담당 직원)	근로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수당(만원) / 33.3 / 41.6 / 50 / 58.3 / 66.7
기업현장교사 심화 수당	[심화과정 교육 이수 후] **월 10만원** 추가지급		필수 X
HRD 담당자 수당	[훈련실시 월 지급] **월 25만원**	HRD 담당자	
훈련과정 프로그램 개발비	[개발참여자 1명일 경우] **105만원** 일시지급(1회 한정)	현장교사 (교육담당 직원)	개발 참여한 기업 관계자가 수령
외부평가(자격시험) 합격수당	[훈련 종료 후] 합격인원당 **120만원**	기업	240만원 중 50%씩 각각 학습근로자, 기업 수령

| 학습근로자 1인 채용 시 | **연간 기본 1,490만원, 최대 1,730만원 수혜 가능**

※ 훈련시간 및 심화교육 이수 여부, 외부평가 합격 여부에 따라 최대금액 변동될 수 있음.

기업의 기본 참여조건

-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은 부적격

순번	지정요건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이 아닐 것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가능(사전 컨설팅 시 세부 안내)
- 기업신용등급이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 단,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훈련 장소 및 장비 보유

기업지정 평가지표 요약

※ 합산 70점 이상 시 지정 (세부지표 컨설팅 시 안내)

연번	구분	세부항목
1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 (40점)	① 전담자(기업현장교사·HRD담당자) 선발 및 관리 (10점) 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10점) 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방안 (5점) **우량기업* 만점적용** 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10점) ※ CEO인터뷰+사업수행계획서로 평가(HRD 또는 인사권자로 인터뷰 대체 가능) ⑤ 유사훈련 실시경험 (5점) **우량기업* 만점적용**
2	기업 여건의 적절성 (30점)	① 신용등급 (5점) A등급군: 5점 / B등급군: 4점 / C등급군: 3점 / D등급군: 지정제외 ② 상시근로자 수 (15점) 100이상: 15 / 50이상-100미만: 12 / 20이상-50미만: 9 / 20미만: 6 ③ 장기근속(3년)현황 (10점) **우량기업* 만점적용** 70%이상: 10 / 50%이상 70%미만: 7 / 40%이상 50%미만: 5 / 30%이상 40%미만: 3 / 30%미만: 0
3	인적·물적 인프라 (30점)	기업현장교사 후보군(10점) **우량기업* 만점적용** 6명 이상: 10 / 5명: 7 / 4명: 5 / 3명: 3 / 2명 이하: 0 훈련시설장비(10점)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10점)
4	가점 (4점)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선도기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외투기업 부문 포상기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소재 기업, ⑤ 교육부 산학협력우수인증 기업

*** 우량기업 기준**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HRD-Net 조회기준 또는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 →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판단
2. 청년친화 강소기업, 참 괜찮은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Best HRD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기관, 명장기업, 기능한국인기업, 우수숙련기술자 기업, 숙련기술전수자기업, 숙련기술모범사업체, 월드클래스, 우수기업연구소(ATC, ATC+), 글로벌 강소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소부장으뜸기업, 밸류업우수기업
3.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및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 중 "유사훈련 실시경험"에 해당하는 이력이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인 기업
4.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기업

기업지정 절차



참여신청
사전컨설팅 시 신청방법 안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조회

서류·현장심사

학습기업 지정

기업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1년 간)



학습기업 지정 →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 → **사업장외교육훈련(Off-JT)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 **자격(학위) 취득 가능**

- ① 학습기업 지정 완료 후 →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각 1인 이상 지정
- ② 동남보건대 교수진과 기업현장교사 공동 훈련과정 개발
- ③④ 1년간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 ⑤⑥ 각 교과목(능력단위)별 평가 시행하여 자격 및 학위 취득

※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법24조 계속고용의무)

주요 협약 기업

한미약품 | inno.N | 제일약품 | Dongkook 동국생명과학 | DONGBANG FTL
동구바이오제약 | KYUNGBANG | SN BioScience | (주)화이트 생명과학 | (주)국토해양환경기술단

동남보건대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FAQ

Q 학습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준수해야 하나요?

A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법 적용은 의무입니다.

Q 학습근로 계약기간은 꼭 1년인가요? 더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A 1년 과정의 사업으로 계약의 연장 및 축소가 불가하며, 종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도 종료됩니다. 사업기간 후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은 가능합니다.

Q 계약종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은 의무사항인가요?

A 외부평가(사업 종료시점 시행되는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한하여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전 컨설팅 시 관련 세부 안내를 드립니다.

Q OFF-JT 훈련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매주 토요일 학교로 등교하여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단, 방학기간은 훈련 미실시)



동남보건대학교
DONGNAM HEALTH UNIVERSITY

동남보건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정자동) 동남보건대학교 해운관 517호

TEL. 031-249-6299 HP. 010-7556-7110